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관계법령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

## 3. 주요골자

가.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(안 제3조)

○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○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% 해당액

○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

○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
○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

나.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(안 제4조)

○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(지장물철거 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
○ 법 제4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
○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

## 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제정건은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10년 이상 사권이 제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수신청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재정의 계획적,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법제화 함으로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해소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확보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
○ 타시·도나 타구의 보상기준이나 적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부당한 보상으로 인한 민원 등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용이나 해설에 각별한 관심과 법규연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됨

○ 또한 개인의 재산보호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란 차원에서 공사익간 실익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 법정서와 본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익이 우선시 되도록 특단의 배려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

○ 특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권한위임 규정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접수, 매수결정 및 토지매수,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관련

□ 위 조례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